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5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15.

발 의 자 : 이종성 · 하영제 · 윤창현

임이자 · 최재형 · 배준영

조정훈 · 백종헌 · 김형동
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,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음.

따라서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‘노인장기요양보험법’의 제명을 ‘국민장기요양보험법’으로, ‘노인성 질병’을 ‘질병’으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,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명, 제1조, 제2조제1호)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노인장기요양보험법”을 “국민장기요양보험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노인성 질병”을 “질병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”을 “대통령령”으로 하고, “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”를 “질병을 가진 자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노인장기요양보험법</u>	<u>국민장기요양보험법</u>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고령이나 노 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 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 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질 병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노인등”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서 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 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 <u>대통령령</u> ----- -- <u>질병을 가진 자 또는 그밖 의 이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</u> ----- -----.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